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Malaysia Non Tariff Barriers Issue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개정) No.4 2020」,
2024년 1월 1일 발효



식품 법규 체계 정비와 국가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식품 조례 개정

2020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는 현행 「식품 규정 1985 (P.U. (A) 437/1985)」를 개정하는 「식품 규정(개정)(No.4) 2020 (P.U. (A) 209)」를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개정된 말레이시아 식품 조례는 식품 라벨, 식품 첨가제 관련 개정 사항이 포함됨

1. 배경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는 2020년 식품 법규 체계를 정비하며 식품 영양 정보에 대한 라벨링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 22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를 거쳐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임. 말레이시아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요 변경 사항을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 변경 사항

1) 식품 첨가물 라벨링 (상세 내용은 말레이시아의 [식품첨가물 INS 라벨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명칭 또는 INS(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번호를 표시해야 함

* INS 번호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번호 시스템

② INS 번호가 없는 식품 첨가물의 기능과 유형, 명칭을 표시해야 함

③ 식품 첨가물에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 기능만 표시하면 됨

④ 식품 첨가물이 향료일 경우, 라벨에는 기능 표시만 필요함

※ 식품 첨가물 라벨링 예시

[이전] 첨가물 라벨	[개정] 첨가물 라벨
허용된 OO 함유(식품 첨가물 종류 명시) 예) 허용된 방부제 함유	기능(식품 첨가물명/INS번호(해당되는 경우)) 예) 방부제(벤조산/210)

2) 영양 표시 변경 사항

① 영양 성분 표시

- 영양 표시 요건이 적용되는 식품의 범위가 확대됨
- 총 설탕의 양을 라벨에 100g 당 또는 100ml 당 또는 포장당 g으로 표시해야 함

※ 영양소기준치(NRV, Nutrient Reference Values)** 변경 사항

구분	영양 성분
(신규) 영양 성분 표시 필요	비타민 K, 판토텐네이트, 비오틴, 구리, 셀레늄, 망간, 몰리브덴, 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에너지
NRV (증가)	비타민 D,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
NRV (감소)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 영양소기준치(NRV) : 식품 간 영양소 비교가 쉽도록 식품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 1일 섭취 기준량

② 영양 강조 표시 (상세 내용은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탕 무첨가 및 나트륨 무첨가 표시 조건을 규정함

- (a) 설탕 무첨가 강조 표시가 있는 경우, 식품 중 자연 발생 당 함량을 1회 제공량 당 100g 또는 100ml 단위로 표시해야 함
- (b) 식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트륨이 첨가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나트륨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표시가 가능함
- 허용된 영양 기능 강조 표시 및 기타 기능 강조 표시는 제 5A 부칙의 표 III 및 표 IV를 준수해야 함
- 기능 강조 표시에는 **영양소가 질병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3) 라벨 표시 금지 문구

- ① 특별한 식단(special dietary) 이라는 단어 또는 이와 동등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 ② 유기농(Organic), 생물학적(biological), 생태학적(ecological), 바이오다이나믹(biodynamic) 또는 기타 유사 단어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정한 조건 또는 승인 요구에 부합해야만 사용이 가능함
- ③ 통곡물(wholegrain) 또는 통밀(wholeme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a) 100% 통밀 또는 통밀의 소맥분, 밀가루, 쌀 또는 곡물
 - (b) 60% 이상의 통밀 또는 통밀식빵
 - (c) 기타 제품 중 1회당 25% 또는 8g 이상의 통곡물 또는 통밀이 함유된 경우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출처

말레이시아 ATTORNEY GENERAL'S CHAMBERS, PERATURAN-PERATURAN MAKANAN(PINDAAN) (NO. 4) 2020, 2020.07.21

Chemlinked, Reminder: Malaysia's Food (Amendment) (No.4) Regulation 2020 Takes Effect on Jan 1, 2024, 2023.12.05

KATI 농식품수출정보, 말레이시아 보건부 10년 만에 개정된 식품 조례 발표, 2020.08.25